#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71 발의연월일: 2025. 4. 16.

발 의 자:위성곤·신정훈·이광희

박해철 · 정일영 · 이용선

박지원 • 오기형 • 권향엽

정진욱 • 이학영 • 김기표

김 윤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생산한 기록물의 보호·관리 및 공개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는 경우에 대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대통령이 파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사유와 관련된 기록 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공개를 제한하거나, 전직 대통령이 열람 권한을 악용할 우려가 있음. 또한 대통령 궐위 시 기록물 이관 및 공개 과정에서의 혼란과 공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헌법상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탄핵 사유 및 수사·재판과 중대한 관련이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이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

또한 전직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형사처벌을 회피하거나, 기록물을 유출·은닉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한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제한함으로써 기록물의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역사적 진실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등).

#### 법률 제 호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대한민국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탄핵 사유 또는 그 수사 및 재판에 중대 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는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없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다.
- 1.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 2. 재직 중 「대한민국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 3.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4.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체류 또는 보호를 요청하

거나 요청하려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5.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 외로 반출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형이 확정된 경우
- 6. 제1항에 따라 열람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비밀인 사실을 누설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형이 확정된 경우
- 7. 대통령기록물을 정치적 목적 등으로 활용하여 공공의 이익을 중대하게 해한 사실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인된 경우제20조의2제1항 후단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이 탄핵결정에 의하여 궐위된 경우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는 공개할 수 있다.
  - 1. 대통령 탄핵 사유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기록물
  - 2. 탄핵결정을 받은 대통령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중대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이 「대한민국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
	우, 탄핵 사유 또는 그 수사 및
	재판에 중대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하
	여는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없
	<u>다.</u>
<u>②</u> ~ <u>⑥</u> (생 략)	$\underline{3} \sim \underline{7}$ (현행 제 $2$ 항부터 제 $6$
	항까지와 같음)
제18조(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제18조(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등) ① 전직 대통령은 <u>제17조</u>	등) ① <u>제17조</u>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당	<u>제5항</u>
선인 및 대통령 재임 시 생산	
•접수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	
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열람 등	
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기록관	
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편의 제공에 관한 협의	
진행상황 및 편의 제공의 내용	

등을 문서로 기록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② · ③ (생 략)

<신 설>

\_\_\_\_\_

-----.

- 1. ~ 3.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 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다.
- 1.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 2. 재직 중 「대한민국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 3.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수
- 4.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체류 또는 보호를 요청하거나 요청하려 한 사실 이 확인된 경우
- 5.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손 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 거나 국외로 반출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형이 확정된 경우
- 6. 제1항에 따라 열람한 대통령

#### ④·⑤(생략)

제20조의2(대통령 궐위 시 대통 경 링기록물 관리) ① 대통령기록 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즉시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하여 목록 을 작성하는 등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직선 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 되기 전까지 이관을 완료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인력 지원 등 대통령기록관의 이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 비밀인 사실을 누설 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형이 확정된 경우 7. 대통령기록물을 정치적 목적 등으로 활용하여 공공의 이익 을 중대하게 해한 사실이 전 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인 된 경우 ⑤ · ⑥ (현행 제4항 및 제5 항과 같음) 20조의2(대통령 궐위 시 대통 령기록물 관리) ① -----

0 , 2 1	/			
제20조의2(디	개통령	궐위	시	대통
령기록물	관리)	1		
· 				
	- 기의	સ્રો તો તો	· おい	rl.
	<u> 기 전</u>	01090	. <u> </u>	<u>1</u> .
② (현행고	과 같음	-)		

#### <신 설>

-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이 탄핵결정에 의하여 궐위된 경우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는 공개할 수있다.
- 1. 대통령 탄핵 사유와 관련된내용이 포함된 기록물
- 2. 탄핵결정을 받은 대통령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중대

   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